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
정기심사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90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			생년월일
	주소				전화번호
신청 내용	제조업체명			전화번호	
	제조업등록번호			제조업등록 연월일	
	소재지				
	관리책임자			생산능력(1일 생산량)	
	생산사료	양축용 배합사료([]고기소 []젖소 []돼지 []닭 []개 []말 []면양·산양 []사슴 []오리 []칠면조 []토끼 []메추리 []꿩 []오소리 []타조), []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, []프리믹스용 배합사료, []대용유용 배합사료, []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,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([]실험용 동물 []애완용 동물 []사육하는 동물 []어류), []단미사료, []보조사료			

지 정 일

직전 정기심사일

「사료관리법」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의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제조업등록증 사본	수수료 「사료관리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--------	---

